

일시: 12/9(화) 14시~16시
장소: 이주민센터 친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
(일승빌딩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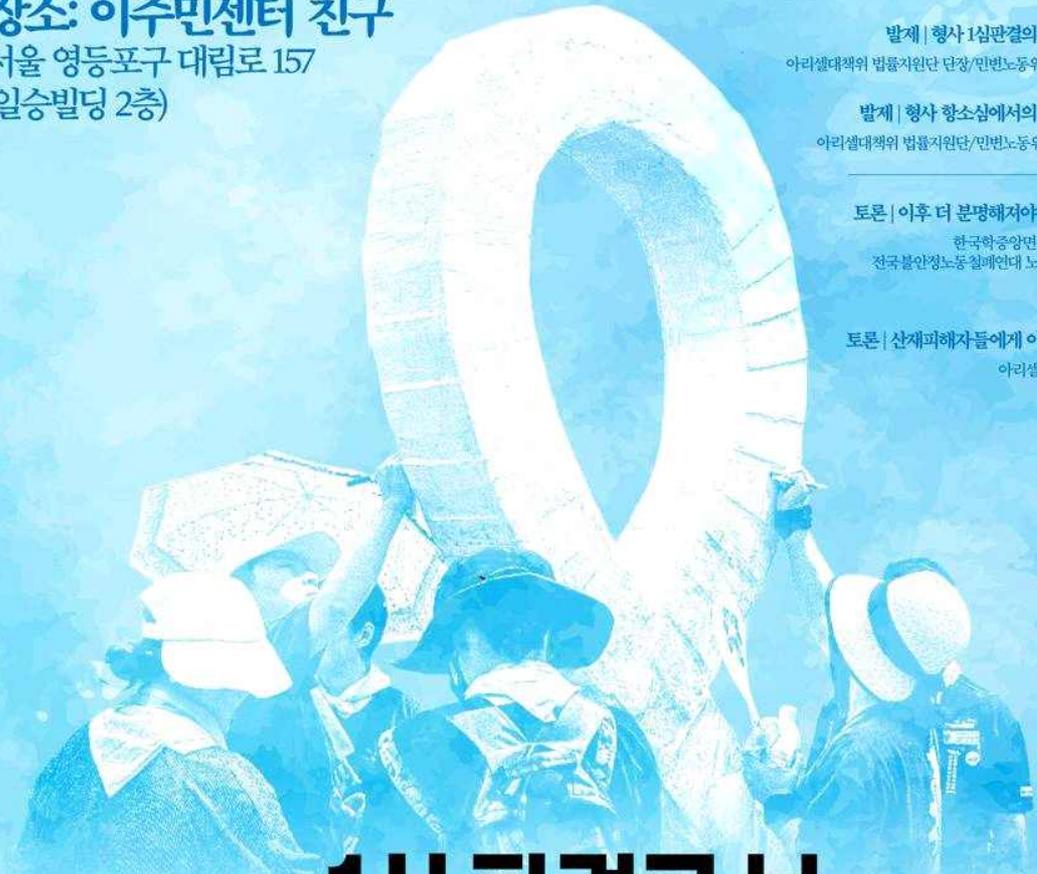
사회 |
아리셀대책위/김용균재단 활동가 권미정

발제 | 형사 1심판결의 요지 및 민사쟁점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민변노동위 신하나 변호사

발제 | 형사 항소심에서의 쟁점에 관한 분석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민변노동위 손익찬 변호사

토론 | 이후 더 분명해져야 하는 우리의 대응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교수
전국불인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철식 교수

토론 | 산재피해자들에게 아리셀 판결의 의미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고 김병철 남 유족
유가족 최현주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의미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주최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장소후원 | 이주민센터 친구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의미 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 ▲ 일시: 12/9(화) 14시~16시
- ▲ 장소: 이주민센터 친구(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일승빌딩 2층))
- ▲ 주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 ▲ 후원: 이주민센터 친구

▷ 사회: 권미정 (아리셀 대책위 집행위원/김용균재단 활동가)

시간	내용
14:00~14:10	인사말) 양한웅 공동대표 (아리셀 대책위원회)
14:10~14:35	발제1) 형사1심 판결의 요지와 민사쟁점 신하나 변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14:35~15:00	발제2) 형사 항소심에서의 쟁점 분석 손익찬 변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15:00~15:10	토론1> 이후 더 분명해져야 할 대응 김철식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15:10~15:20	토론2> 산재피해자에게 1심 판결의 의미 유가족 최현주 (아리셀 고 김병철 님)
15:20~16:00	의견 나누기, 단체 사진, 마무리

<자료집 순서>

인사말	p1
발제1_형사 1심판결의 요지와 민사쟁점	p2
발제2_형사 항소심에서의 쟁점 분석	p10
토론1_이후 더 분명해져야 하는 대응	p20
토론2_산재피해자에게 1심판결의 의미	p24

인·사·말

양한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이 희생자 가족들과 대책위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판에 포함한 법률 대응까지 고민하며 진행해온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부족한 형량이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참사의 주범들에게 중형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스물세 분의 노동자들은 살아 돌아 올 수 없으며, 희생자 가족분들의 슬픔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며 이윤에 눈먼 자본의 탐욕에도 제동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희생자 가족들과 대책위의 현장과 법정투쟁으로 처벌을 받게 하여 산재 사망사고 재판에 하나의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살인 단속하고 차별하고 노동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아리셀 중대재해 판결’이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책위는 항소심에서도 희생자 가족분들과 합심하여 참사의 책임자들이 더 엄중하게 처벌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착취와 차별에도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발제 1

형사 1심 판결의 요지와 민사쟁점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 단장)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참사는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는 리튬 1차전지라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 파견 노동자들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한 아리셀 경영진에 의한 명백한 인재이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아리셀 형사 1심 판결이 지닌 법적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항소심과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쟁점들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리셀 형사 1심 판결의 주요 요지: 법적 의미와 성과

아리셀 형사 1심 판결을 통해 아리셀 대표 박순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중한 처벌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아리셀 법인에게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 불감증과 고질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고 평가되고 있다.

가. 경영책임자 실질적 지위 인정의 법리

재판부는 아리셀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피고인 박순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박순관은 2000년 8월 18일 에스코넥을 설립하고, 2020년 5월 13일 에스코넥의 리튬 1차전지 사업부를 신설 법인인 아리셀로 분리 설립한 실질적인 사업 지배자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인 박중언에게 운영총괄본부장 직위를 부여하고 경영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24고합822 판결문 135면).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이 ▲아리셀 설립 직후부터 박중언에게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경영 사항을 보고받고(24고합822 판결문 137면), ▲군납 수주에 관하여 투찰 가격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등(24고합822 판결문 137면) 아리셀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바지사장’ 논리를 사법부가 명확히 차단한 중요한 선례이다.

나. 고위험 물질 취급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광범위한 주의 의무 인정

재판부는 리튬 1차전지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임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리셀 사업장에서의 과거 수차례 화재(2021.11.12., 2021.12.06., 2022.03.29.) 및 동종업체인 비츠로셀의 화재 사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위험성 지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24고합822 판결문 56면).

특히 사고 이틀 전인 2024년 6월 22일에도 공장 2동에서 동일한 종류의 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문제가 된 동일 로트(Lot)의 전지를 분리 보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소한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해당 로트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24고합822 판결문 94면), 이러한 조치 없이 문제가 된 전지들을 사망자들이 작업했던 3동 2층으로 운반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중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항을 적시했다.

-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재판부는 비상구의 ‘설치’ 자체는 규정에 부합했으나(24고합822 판결문 177면), 비상구와 비상통로에 리튬 전지를 대량 적재하고 가벽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고합822 판결문 11면).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확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망자 23명 중 주식회사 메이셀 소속 파견근로자 20명에 대해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 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원청인 아리셀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취하여야 하는 행동요령에 대하여는 별다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24고합822 판결문 102면), 이로 인해 파견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했다.

- 위험성 평가 미실시 및 조작: 2022년 위험성 평가 시 과거 수차례의 리튬 전지 폭발 사고를 유해·위험요인으로 발굴하지 않았고, 2023년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24고합822 판결문 10-11면).

다. 불법 파견의 구조적 책임 강조

사망자 23명 중 아리셀 소속 근로자는 3명이었고, 메이셀 소속 파견 근로자가 20명이었다. 이들은 파견법상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된 명백한 불법 파견 상태였으며,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파견근로자들을 유해·위험한 작업장으로 파견하며 아무런 관리 조치도 취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질타하며(24고합822 판결문 172면), 불법 파견 상태가 원청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키운 구조적 원인임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는 기업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 집단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 책임을 외면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다.

라. 양형 이유에 나타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이번 판결의 백미는 양형 이유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단호한 태도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생명 경시 풍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중형 선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첫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예고된 인재’였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고 판시하며(24고합822 판결문 170면), “피고인들이 아리셀을 운영하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느꼈어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24고합822 판결문 169면).

둘째, 재판부는 ‘합의를 통한 감형’이라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 투자를 회피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자금력으로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24고합822 판결문 171면).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작용되길 바란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며 경영책임자의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판시했다(24고합822 판결문 173면). 이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항소심을 위한 핵심 쟁점

1심 판결은 중형 선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제한적 해석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항소심에서는 이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인과관계의 제한적 해석: 2단계 인과관계론의 극복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박중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만 인정하는 소위 '2단계 인과관계론'을 따랐다(24고합822 판결문 149-151면). 이는 검찰이 공소장에서부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현장 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을 야기하고, 이것이 재해로 이어졌다는 단선적인 경로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소 구조는 피고인 측에게 핵심적인 공격 지점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피고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24고합822 판결문 179면), '유지' 의무 위반 역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만약 항소심에서 산안법상 '유지' 의무 위반마저 무죄가 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 의무 위반 사실 전체가 인과관계 단절로 무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시스템 부재 자체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경영책임자의 재해 예방 예산 미편성, 안전보건 목표 미설정 등 경영상 결정 자체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해야 한다.

즉,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하급자의 산안법 위반과 독립적으로 재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1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 교육 및 위험 작업 범위의 확대 해석 요구

재판부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 내용의 부실함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24고합822 판결문 101면).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위탁한 교육이라도 그 내용이 리튬 폭발 위험성이라는 사업장의 실질적 위험을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최종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 위험 사업장에서는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

또한, 3동 2층 포장 작업에 대해 “리튬 자체를 조작·변형·가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리튬이 들어 있는 전지 외장재에 일정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별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24고합822 판결문 105면).

리튬 전지 완제품 수만 개가 밀집된 공간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작업은 위험물질 취급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 당연히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위험의 실현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 확대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3. 민사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및 실질적 권리 회복 방안

법률지원단은 미합의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에스코넥, 아리셀, 그리고 박순관, 박중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집중할 것이다.

가. 모회사 에스코넥의 실질적 지배 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의 핵심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주식 96%를 소유하며, 자금 지원과 군납 계약 이행 등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지배 법인이 다.

형사 판결에서도 박순관이 양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리셀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에스코넥은 단독으로, 또는 아리셀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아리셀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의 안전 의무 위반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 투자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사법부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문제이다.

나. 파견노동자·이주노동자의 일실회 산정 기준 : 정규직 임금 및 국내 가동 연한 적용

사망한 파견 노동자들의 일실회 산정 기준이 피해 회복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들은 파견법상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된 불법 파견 노동자이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리셀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일실회는 파견 회사 임금이 아닌, 아리셀에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아리셀 정규직 생산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불법 파견을 통해 이윤을 취한 기업이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체류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만 65세까지의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가동 연한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확고한 원칙이다.

다. 위자료의 가중 및 피해자 중심적 산정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23명이 희생된 대형 재난 사고이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행위 불법이 중대하다.

재판부 역시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유해는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별로 신원을 확인하여 시신을 수습하기조차 어려웠다”고 언급할 정도로(24고합822 판결문 167면) 참상의 정도가 극심했다. 따라서 망인의 위자료는 법원 기준 금액을 넘어 3억 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한 기업의 행태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유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특히 이주 노동자 유가족들이 겪는 언어적·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엄중하게 가중 산정해야 한다.

4. 결론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의 노동 안전 시스템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가 낳은 비극이다. 우리는 이번 1심 판결을 발판 삼아 항소심에서 법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경영책임자들에게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확고히 실현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3명의 소중한 희생이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참사의 진정한 종결임을 명심해야 한다.

발제 2

형사 항소심에서의 쟁점 분석

손익찬 변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 민변 노동위원회)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항소이유서(1) -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1. [항소이유 제1점] 아리셀 전지에 제조상 결함 및 화재 예견가능성

가. 제조상 결함

- 원심은 1) 분리막 손상, 팽윤현상, 3) 이물질 등 아리셀 전지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전지에서 '내부 단락'(쇼트=합선)이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정작 어떤 결함인지 증명 못함. 국과수도 '논단 불가'라고 결론 내림
- 따라서 전지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함.

나. 화재의 예견가능성 (전해액 주입 후 에이징 기간 중 폭발에 관한 예견)

- 원심은 '리튬 1차전지의 일반적 폭발가능성'을 강조했으나, 피고인들은 제조공정 중 절연검사 4회, 온도검사 3회, 누액검사 및 외관검사까지 9회의 검사를 통과했었음
- 에이징은 전압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품질·성능을 위함이지 안전성 검증과 무관
- 단락 확대나 지연 폭발은 실체가 없음: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확립된 견해나 실험적 연구가 없다는 것도 원심이 인정

- 참사 이틀 전에 한 개 전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전지에 관한 폭발을 예견할 수 없음

2. [항소이유 제2점] 구체적 주의의무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열감지기 설치를 해서 전지 발열을 감지하였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 열감지기로는 수천 개 이상의 개별 전지의 발열 여부를 확인 불가
- 비츠로셀도 전해액 주입 후 온도검사 1회 진행하는 것 외에는 별도 모니터링 안 함, 지멘스 배터리도 모든 공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하진 않음
- 여러 개 전지가 발열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열감지기 설치했다면 화재 예방 가능했다는 증거도 없음

나. 참사 이틀 전(6월 22일) 화재 사고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 참사 이틀 전에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에서 참사의 원인이 된 폭발이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음 (오0속의 수사기관 진술은 배척한 것은 부당, cctv 영상 보면 원심판단이 맞는 것이 아님)
- 전해액이 주입되고 밀봉된 전지는 드라이룸에 보관되었다가 2~3일 후에 후속 공정이 진행됨. 따라서 피고인 박중언 입장에서선 24년 6월 22일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가 이동되어 후속 공정이 진행되리라고 예상 못함.
- 단락확대/지연폭발에 관한 입증이 없음. 따라서 6월 22일 폭발이 발생했다고 해서. 앞서 검사가 모두 통과한 이상 모든 전지를 다시 검사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없음

다. 화재발생 대비 안전조치 관련 주의의무

-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소방 훈련 및 교육 미실시
- 위험성평가 미실시
- 비상구 설치 미실시
- 비상구, 비상통로 유지 미실시

1)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과 사상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 24년 입사자에 대해서는 23년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을 할 수가 없음.
- 안전교육 내용 중 화재폭발시 대피 사항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없음(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내용- 개정법은 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2)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

- 24년은 위반 사실이 없음 : 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 설령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화재가 특수했으므로 소방계획이 세워져 있었어도 사상 결과 막기 어려웠다(인과관계 없다).

3) 위험성평가

- 21, 22년 화재폭발 사고의 대책은 모두 시행되었으므로, 21년과 22년 사고내용이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23년 위평 실시했어도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대비책 수립도 불가함. 대한산 업안전협회 등 어떠한 전문가도 3동 2층 전지의 지연폭발 가능성 얘기 안 해줌.

4) 기술연구소장 김0철, 생산관리팀장 김0협의 경우

- 이들은 전지 전문가이고 비상구 등 위치도 모두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항소이유서(2) - 아리셀 3동 2층 비상구 설치 및 비상구/통로 유지의무]

1. 안전보건규칙 제17조 관련 법리오해, 사실오인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단서, 제2호, 제3호 생략)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가. 비상구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렸고 그에 따라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서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정함

- 법령의 내용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외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 원심은 피난층 또는 지상과 연결되는 ‘직통계단’으로, 비상구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정의함. 그에 따라 위험물질 제조/취급하는 건축물은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정의됨.
- 아리셀 3동은 좌측 상단의 계단은 주출입구로, 직통계단임. 그리고 우측 하단의 통로는 건축법상 피난시설로서의 직통계단이 아니라 아리셀이 임의로 설치한 일반 계단임
- 건축법상 직통계단을 2개 이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물의 경우, 즉 직통계단이 1개인 경우에는 주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아리셀 2동의 경우 직통계단이 1개짜리인 2층 건물인데, 어떤 감독기관에서도 직통계단을 2개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음.

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비상구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3동 2층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지 않으므로 3동 1층과 달리 취급되어야 함.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속한 건물의 모든 층에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음 : 위험물질이 없는 3동 2층 근로자들은 비상구가 필요 없으므로.

2. 안전보건규칙 제18조 관련 법리오해, 사실오인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3동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상구를 유지할 필요도 없음
- 제18조의 의미는 비상구 진입부분 자체를 물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는 것이지, 그 길을 쉽게 이용하도록 유지하라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를 교육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님.
- 재난발생 시에는 비상구로 통하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보안설정을 했음. 따라서 ‘정상시’에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서 의무위반이 되는 것이 아님.

3.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가.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 작업장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님. 따라서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화재발생시 작업장에서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음

- 3동 2층 패킹룸에서 화재가 나면 작업자들은 대피할 수가 없음. 대피장소에 전지가 쌓여 있기 때문임. 3동 2층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므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나. 김0철, 김0협이 경우 피난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망함. 따라서 의무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음.

[항소이유서(3) - 중처법, 파견법 위반]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 [항소이유 제1점] 경영책임자에 관하여

- 원심은 사업총괄책임자(전단) 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후단) 중 한 사람만 중처법상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라고 전제함.

1) 중처법상 사업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중처법 적용일인 2024. 1. 27.부터를 기준으로 봐야 함. 그런데 박중언이 박순관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은 2023. 11. 13.임.

2) 아리셀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박중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박순관은 경영책임자가 아님.

나. [항소이유 제2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1) 원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8조 위반을 전제로 중처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제18조 위반이 없으므로 중처법 위반도 성립될 수 없음.

2) 설령 안전보건규칙 제18조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는 엄밀하게 입증되어야 함.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8호는 위반하지 않았음.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5호는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음.

다. [항소이유 제3점] 고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 피고인 박순관은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중처법 시행에 맞춰서 중처법상 의무를 다함. 아리셀에 대해서만 안 할 이유가 없음.
- 아리셀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무위반에 관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음. 박순관을 기준으로 보면 재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음.

2. 파견법 위반

- 파견법 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 박순관이 박중언과 공모하여 2021. 11. 1.부터 2024. 5. 9.까지 한신다이하로부터, 2024. 5. 10.부터 6. 24.까지 메이셀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받았다는 것임. 그 이전의 업체와의 계약한 내용과, 한신다이하와 계약한 내용은 구분됨
- 그러나 박순관이 불법파견 임을 인지했다는 증거로 사용된 것은 2021. 11. 1. ‘합법도급’ 당시의 사정들임.

[항소이유서(4) - 양형부당]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의 부당성

가. 일반적 양형사유

-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를 피고인들에게 지운 것은 부당.
-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됨.

나. 구체적 양형사유

- 1) 피고인들은 기품원 납기일에 맞춰서 무리하게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이 아님.
- 2) 제조상 결함이 내부 단락을 야기했음이 증명되지 않았음. 나아가, 그것이 비숙련 파견노동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음. 3동 2층의 후공정은 가장 단순한 공정인데 거기에 비숙련 노동자를 투입해서 전지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됨.
- 3) 그 밖의 사유들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한 주장.

2. 박순관의 경우

- 박순관은 안전에 관심을 보였고 무책임한 경영자가 아님.
- 박순관이 아리셀에 대해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3. 박중언의 경우

- 박중언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음.
- 건축법 위반의 결과(대수선)로 인해 비상구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사기, 업무방해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함.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겠음.

II. 피해자 변호인들의 대응 방향

들어가며

“1심에서 15년이 나왔는데 바뀌겠어?” 네. 박순관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박순관이 유죄확정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항소심 특성상 여론관심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1. 아리셀 3동 2층에 작업에 관한 성격 규명 : 위험물질 취급 작업이 맞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원심은 “위험한 작업”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의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면서, [별표 1]에 따르면 리튬은 ‘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만 리튬1차전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는 리튬이 아닌 리튬 1차전지만 취급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제2호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의 ‘가목’에서는 “리튬”을 정하는데, “(거목)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목)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도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법규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사재판임을 감안하더라도, ‘리튬1차전지’가 ‘거목’과 ‘너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 검찰의 주장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어야 하고,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많은 논점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 중처법상 의무 위반은 2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음.

2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더라도, 꼭 산안법상 의무가 매개가 될 이유는 없음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㉓, ㉔, ㉕는 조문에는 없으나 임의로 표기한 것입니다.

- 검찰은 2단계 인과관계론에 입각해서 기소함
 - 1) 산안법상 조치의무위반이 있음.
 - 2)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못해서, 산안법상 의무위반이 방치됨.
→ 이러한 논리구조에서는 산안법상 의무위반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중처법상 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우려가 큼

- 그러나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2단계 인과관계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음. 오히려, 다음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주장되고 관철되어야 함
 - 1)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위반으로 직접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예견이 가능함.
 - 2) 2단계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매개가 되는 의무위반이 꼭 산안법상 의무위반일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중처법의 매개가 되는 의무위반이 될 수 있음.

3. 피고인 박순관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함

- 변론의 내용이 그러함. 무죄를 주장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님(누구나 자기의 범죄를 부인할 권리는 있으므로).

토론 1

이후 더 분명해져야 할 대응

김철식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구체적 법적 쟁점보다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유발한 구조적 요인으로 1) 다단계 하도급에 기반한 노동력 공급 구조와 2) 이주 노동의 쟁점을 제기함.

1. 다단계 하도급에 기반한 노동력 공급 구조

1)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 확장과 책임 회피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공단의 제조업 사업장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간접고용, 인력파견이 만연해 있음. 개별 기업이 스스로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협력업체(생산전문위탁, 하도급생산 등)가 공존. 이들 업체의 노동력은 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조달함. 여기에 중간알선업체와 비공식 네트워크 등이 중층적으로 개입하면서 복잡한 고용관계가 형성됨.

- 다단계 하도급에 기반해 복잡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면서 직접고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장이 밀집한 대부분의 공단에서 신규 채용은 파견,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만 가능한 상황임.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된 것인지, 실제 고용된 노동자이긴 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노동권의 근거가 되는 고용관계 자체가 점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기업에 직접 고용된 직접 고용, 정규적 고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별로 다양화됨. 비정규직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의 파편화가 진행됨. 이처럼 오늘날 노동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수많은 형태와 양상의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음. 공단에서 일상화된 다단계 하도급에 기반한 복잡한 고용관계 양상도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고용관계가 복잡해지고 모호해진다는 것이 기업에 종속된 노동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다층위의 하도급 업체와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자신의 수익을 위해 동원하는 등 기업의 지배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고용관계가 파편화, 복잡화되고 모호해지는 현상은 자본의 지배 영역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본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활용하는 노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함의함. 이는 노동권의 후퇴,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의 확대를 낳고 있음.

2)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작업장 위험 양산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책임 회피는 작업장의 위험을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 복잡한 고용관계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함. 원청은 하도급을 통해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회피. 당장의 수익에 급급한 하도급 업체는 안전관리에 신경쓸 여력이 없음. 인력공급업체는 사업장에 아예 담당자가 없으며 안전조치의 권한도 없음. 이렇게 안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노동력을 추구하는 기업이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 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 등을 하려고 하지 않음.

- 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일상적 고용불안과 빈번한 작업장 이동을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대처하기는 어려움. 자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된 것인지, 고용형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음.

3) 원도급 업체의 책임 부여와 파견법 폐지

- 중대재해와 작업장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노동자 안전의식 고취, 안전교육 강화가 제기되기도 함. 그런데 작업장의 위험은 안전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음. 안전교육 자체 보다는 근원적으로는 그러한 작업장 위험을 양산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고용의 파편화와 기업의 노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와 관행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같은 일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원도급 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고용 여부나 하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동원하는 모든 노동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책임을 드러내고 쟁점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그럼으로써 작업장 위험을 심화하는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함. 또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인력공급을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인력파견, 인력공급업체의 열악한 일자리 양산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이주 노동과 관련하여

1) 저임금 노동력 공급의 주요 원천인 이주 노동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풍부한 노동력 층을 저임금 노동력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해 왔음.
-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촌 노동력 공급 풀이 고갈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권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음.
- 이런 상황에서 농촌 노동력을 대체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 노동을 저임금 노동력 공급 원천으로 적극 활용하게 됨.

2) 이주 노동 확대와 이주 노동자 정주 제한의 모순

- 이주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소 모순적임. 저임금의 좋지 못한 일자리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주 노동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이주 노동자의 국내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주 노동의 기간과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정주 억제를 위해 취업 기간, 허용 직종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둬으로써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킴.

-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다양한 비자를 세분화하여 합법 취업의 허용 범위를 제한. 그런데 제도상의 엄격한 취업 영역 제한이 현실에서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움. 가령 재외동포 비자(F4)가 단순노무직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단순노무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기도 함. 또한 취업비자의 엄격한 제한이 다양한 미등록 노동을 양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근거로 다시 노동에 대한 통제와 불안정노동이 강화되기도 함.

- 한편 엄격한 취업 제한이 있는 공적 경로를 통한 취업, 일자리 알선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나 브로커 등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기도 함. 따라서 다단계 하도급의 중층적 고용, 간접고용에 보다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이런 점에서 이주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정주는 허용하지 않는 이주노동에 대한 모순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할 필요가 있음.

토론 2

피해자에게 1심 판결의 의미

최현주 유가족

(아리셀 고 김병철 님)

